

제 III 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1장 행정계획

제2장 재정계획

제3장 투자계획 및 집행방안

제1장

행정계획

1. 미래지향적 자치역량 확보

2. 지역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적 지역개발

3. 투자통상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

1. 미래지향적 자치역량 확보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의 자생적 발전 계기 마련과 행정서비스의 개선

-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경영마인드를 토대로 창의성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려는 분위기 확산

■ 중앙정부의 통제와 행정수요 대응능력 저하

- 미흡한 분권화 수준과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경직성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나. 여건변화와 전망

■ 지방분권에 따른 권한 및 자율성 증대

- 효율성 지향의 사고 전환과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요구

■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기능 재편 요구

- 세계화의 흐름은 지방단위의 경제영역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신장

■ 시민사회의 성장과 자치행정의 민주성 요구

- NGO나 시민단체 등을 통한 자치행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 요구

■ 경쟁원리의 도입과 시장성의 강화

-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있어서 민영화, 민간위탁, 제3섹터방식 뿐 아니라 보다 수익자부담원칙의 다양한 공급방식을 모색

■ 지방행정 수요구조의 변화

- 지방행정이 단순히 주민에 대한 복지 및 대민서비스의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할 수행

다. 계획의 기본방향

■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한 체감형 고객감동 행정 실현

-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처하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지향적 참여행정체제로 조직 강화

- 행정의 성과와 결과가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도민들에게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분석
- 도정 정보에 대한 공개 확대로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부조리를 제거하고 도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 지방행정의 경영성과 향상과 효율성 제고

- 충남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의 정비와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민간부분과 상호보완과 파트너십 하에서 민간부분을 적극 유도하며, 향후에는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로부터 다양한 공급체도를 모색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장기적·계획적 접근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 공무원 양성의 기반 조성
-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도정운영의 성과와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정착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 참여기제의 제도화 및 정책평가

- 도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기적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주민참여기제를 제도화하고 활성화시킴
- 지역 전문가들이 지방정책결정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 및 감시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함
 - 이를 위해 위원회 운영의 대응성을 강화하고 관·학정책연구팀 구성 및 정책모니터단을 적극 운영하며 정책참여 유인수단을 강화함
- 수요자 중심행정의 실천을 위해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구체적 보완으로 객관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단순비교에서 탈피하여 시책 품질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표로 우수사례의 전달과 확산에 초점을 맞춘 평가시스템 도입

■ 인사운영의 합리화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공무원 육성

-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기반 조성으로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 이를 위해 지방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승진·전보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다면평가제도 등의 개선
- 교육훈련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로 공무원의 능력개발
 - 전문성과 창의적인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

■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경영행정 추진

- 충남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의 정비와 제·개정을 위한 논리개발
 - 현실과 부적합한 법령을 발굴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입안 초기부터 입법동향 관리 및 법령 추진상황 보고를 정례화 하며 언론매체, 설명회 등을 통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확산
-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기능 및 민간운영으로 시설이용이 활성화 되는 기능, 비영리단체에 재정보조 등으로 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등을 중심으로 추진대상을 확대
 - 객관적이고 투명한 계약방법으로 능력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로 수탁기관의 책임성 제고
- 도정운영의 성과향상과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정착
 - 성과와 보상이 연계된 실시간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학습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조직의 성과와 고객만족 제고

〈표 III-1〉 행정계획 분야의 세부추진시책

| 추진시책 | 시책유형 | 세부시책 |
|-----------------------|-------------------|--|
| 참여기제의 제도화 및 정책평가 | 도민참여 제도화 | · 주민참여 정책과 방법의 제도화 · 주민참여프로그램개발 및 우수사례 전파 |
| | 지역전문가의 정책참여 강화 | · 위원회 및 관·학연구팀 구성 · 정책모니터단 운영 및 정책참여 유인수단 개발 |
| |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 · 민원수요 증가 분야 선정 품질평가 확대 실시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보완 · 우수사례의 전달과 확산에 중점을 둔 평가시스템 구축 |
| 인사운영의 합리화와 창의적 공무원 육성 |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기반 조성 | · 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 · 승진·전보인사의 예고제를 통한 객관성 확보 · 다면평가제 개선 |
| | 교육훈련의 계획적·체계적 투자 |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 |
|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행정 추진 | 법령의 정비 | · 현실과 부적합한 법령의 정비와 제·개정 · 입법동향 및 법령 추진상황 보고 정례화 |
| | 민간위탁 확대 | · 객관적이고 투명한 계약방법 개발 · 민간위탁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
| | 성과관리제 도입 | · 성과와 보상이 연계된 실시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조직구성원의 핵심역량 개발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

2. 지역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적 지역개발

가. 현황 및 문제점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미흡

- 협력사업의 경우 창립된 이후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

■ 협력안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견해차

- 협력안건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견해차가 발생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제휴 추진

- 지역간 협력·제휴가 행정기관, 민간단체,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나. 여건변화와 전망

■ 지역개발이 집권·단절형 사회에서 분권·네트워크형 사회로 변화

- 지역간 상호협력 및 역할분담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R&D, 인프라,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행정체제 필요성

-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역간 공동대처가 요구되는 광역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구체적 가시화

- 인접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대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가 가시화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인근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확대

- 도내 시-군간, 인근 광역자치단체의 시-군과 다원적 협력체 구축을 통해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충청권 광역발전을 위한 공동관리운영체계 구축

- 5+2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발굴과 국책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 충청권 차원에서 공동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민·관협력 경영전략 모색

- 행정서비스의 생산·공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인식하고 주민을 단순히 행정서비스의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생산자적 지위로 인식함으로써 참여기회 제공과 경제적 효과를 향상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협력기반의 조성

- 세종시 주변 시·도와 연계발전을 모색하고, 충청권행정협의회 및 충남-전북교류협력회의를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간 공식적 협력은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식적 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협의체별로 나누어져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 활발한 교류 추진
- 지역주민이나 공무원들은 자치단체 홍보매체, 지역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방안의 모색과, 그간의 협력사업의 추진경과나 성과 등에 대해서도 워크숍, 세미나, 언론매체 발표 등을 통해 홍보

■ 협력제도의 정비

- 지방자치단체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공동의 목표로 인식되는 특정 기능에 맞추어 기능적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자발성 증진
- 지방자치단체간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 협력사업으로 상호간 신뢰를 형성하고, 시설의 공동운영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공동시설 운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소수의 지

- 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시설 운영 시범사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필요한 재정 확보하는 장치 마련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기금의 용도는 주민간 협력, 문화·학술·스포츠분야 등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

〈표 III-2〉 지역간 협력개발 분야의 세부추진시책

| 추진시책 | 시책유형 | 세부시책 |
|---------------|------------|--|
| 협력기반의 조성 및 확충 | 협력제도 강화 | · 자치단체간 협력에 대한 제도적 강화 |
| | 협약체 활성화 |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문과의 교류 확대 |
| | 협력에 대한 홍보 | · 홍보매체 등을 통한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추진경과 및 성과 홍보 |
| 협력제도의 정비 및 보완 | 기능적 협약체 구성 | · 공동의 목표로 인식되는 사업과 기능에 대한 협의체 구성 |
| | 공동시설 운영 | · 공동시설운영에 대한 수요조사 · 공동시설운영 시범사업 추진 |
| | 협력기금 마련 | · 법률이나 조례제정을 통한 재정 확보 ·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기금 활용방안 마련 |

3.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의 활성화

가. 현황과 문제점

■ 지방행정 변화와 국제교류

- 국제교류는 기존의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나 상호의존(inter-dependency)의 대등한 관계로 발전

■ 지역별, 분야별로 편중된 국제교류

- 자매결연 자치 단체가 미국, 일본, 중국에 편중되어 있음

■ 미비한 국제교류·통상전문 인력

- 지방행정에서도 국제교류·통상 전문가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제교류 및 통상전문인력의 미비

■ 공급자중심의 지원제도

- 통상지원의 내용이 백화점식으로 모두 나열되어 있어 한정된 통상 지원 자원을 집중화하여 통상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

나. 여건변화와 전망

■ 국제교류협력의 증대

- 민간차원에서의 경제·문화·체육·인적교류 및 상징사업 등 다양한 국제교류가 증대되고 있음

■ 지속적인 수출신장

- 충남은 2008년 하반기의 경제위기하에서 큰 폭의 수출감소를 경험하였으나 2010년 수출액은 540억불로 전년대비 37.1%의 고성장을 달성

다. 계획의 기본방향

■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지방이 국제교류의 한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지방외교와 국제교류를 추진할 조직, 인력, 기반시설 등 기반여건을 확충함

■ 생산적 국제교류 확대

- 민간주도의 교류활동 다양화
 - 기존의 기관장이나 직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유지 방문 중심의 소수 엘리트 중심의 자매결연 활동으로부터 주민,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하는 국제교류로 전환함
 - 지역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민간 교류단체를 발굴·지원하고, 내실화를 위해 사전 교류단계부터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

■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제고

-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능동적이고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견 수출기업 육성
-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지원책 강구
- 해외 우수바이어, 기업 등 해외시장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체계 구축

■ 충남의 투자유치역량 강화

- 도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신활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기반 인재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이전(유치)기업과 도내 대학(전문계고), 연구소간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별 클러스터를 활성화하여 기술발전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 타시도보다 친비즈니스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

라. 세부추진시책

■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국제통상 전담공무원 전문화 및 육성
 - 국제통상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각종 통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역의 수출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을 육성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계(係)수준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순환보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전문공무원”으로 양성
 - 국제통상 전담공무원 전문화를 위해 국제통상 관련 위탁교육, 해외연수 기회 확대, 자매지역간 국제교류 연구과정 등의 전문과정 교육을 확대

- 지역브랜드의 육성
 - 세계시장 지명도가 떨어지는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지역브랜드를 육성

■ 생산적 국제교류협력 확대

- 자매 우호단체와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을 지원
- 외국 지자체 공무원의 한국 이해를 증대하기 위해 K2H(Korean Heart to Heart) 사업을 추진
- 환황해권시대를 대비하여 중화권 교류를 추진하며, 기타 지역 해외교포와의 유대를 증진
-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구축
 - 세계 각국의 자치단체와 국제기구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협력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주요 국제기구(World bank, Clrae, IULA, CEMR 등)와 적극적인 국제교류 협력관계를 형성

■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대중국 수출지원 강화
 - 도내 중소기업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구조전환과 통상지원 추진
- 영세수출기업의 중견기업화 지원
 - 수출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수출이 신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상지원 활동을 강화
- 농수산물 및 인삼제품 수출지원
 - 농수산물 수출을 전략 수출품목으로 육성하려는 농식품부 및 지식경제부의 정책을 활용하여 충남의 농수산물 및 인삼 수출을 지원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기반구축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매력적인 투자환경(교통 및 통신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노동력 공급, 공업용수, 산업폐기물 처리, 직업교육훈련 등)을 조성
 - 기업유치 및 현장애로 전담제 운영

〈표 III-3〉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 분야의 세부추진시책

| 추진시책 | 사업유형 |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
|----------------------------|------------------------|---|
|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국제통상 전담공무원 전문화 및 육성 | · 기초지자체에 전담조직 구성 · 전문과정 교육 확대 |
| | 지역브랜드 육성 | · 지역 중소기업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도, 시군의 브랜드를 육성 |
| 생산적 국제교류협력 확대 | 인적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자매 우호단체와의 상호 교류 확대 · 민간교류사업 지원 · K2H(Korean Heart to Heart) 사업 확대 · 지역 해외교포와의 유대 강화 ·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민족 정신문화 허브」 조성 |
|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지역기업의 수출 지원 | · 대중국 수출지원 강화 · 영세수출기업의 중견기업화 지원 |
| | 지역특산물 수출 지원 | · 농수산물 및 인삼제출 수출지원 |
| 외국자본 투자유치 확대 | 외자유치 기반 확대 | ·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기반구축 |

제 2 장

재정계획

1. 재정계획

가. 현황과 문제점

■ 재정규모의 지속적 확대

- 2010년 충남¹⁾ 본청의 당초예산 총계기준 재정규모는 3조 9,235억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함
- 회계별 구성은 일반회계 3조 3,427억원(85.2%), 특별회계 5,808억원(14.8%)으로 이루어짐²⁾
- 순계기준³⁾ 2010년 충남의 당초예산은 예산총계(3조 9,235억원)에서 중복계산분(2,304억원)⁴⁾을 제외한 3조 6,931억원임

〈표 III-4〉 2010년 충남의 회계별 재정규모(당초예산)

(단위 : 억원, %)

| | 합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 2010 예산(A) | 39,235 | 33,427 | 5,808 |
| 증감액(A-B) | 594 | 1,047 | -453 |
| 증감율 | 1.5 | 3.2 | -7.2 |
| 2009당초(B) | 38,641 | 32,380 | 6,261 |
| 2009최종예산 | 42,189 | 35,887 | 6,302 |

자료: 충남 도청 홈페이지(2010.9.2)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 2009년 총 재정규모, 동종단체(도) 평균보다 1조 3,823억원 작음
 - 충남의 2009년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액은 광역도 평균보다 각각 1조 1,170억원, 7,001억원, 2,523억원이 적음

〈표 III-5〉 2009년 충남과 광역도의 재정규모 비교(결산 총계기준)

(단위 : 억원, %)

| | 재정규모 | 자체수입 | 의존재원 | 채무 | 공유재산 |
|------|--------|--------|--------|--------|---------|
| 충남 | 44,124 | 10,904 | 24,173 | 8,641 | 27,170 |
| 도 평균 | 57,947 | 22,074 | 31,174 | 11,164 | 105,748 |

자료: 2010년 충청남도 지방재정공시(2010.8).

- 2010년 1인당 일반회계 재정규모, 동종단체(도) 평균보다 높으며 인구

1) 이하 충남의 재정 및 예산이라 함은 시군을 제외한 본청 기준을 의미하고 시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시군 포함이라고 명시함.

2) 기금은 3,178억원이며,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4조 2,413억원임.

3) 순계기준은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4) 중복 계산된 내부거래(2,304억원)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은 전출입금 1,031억원, 융자금수입지출 400억원, 융자금회수 및 상환 43억원, 예탁/예수금상환 29억원 등임(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참조).

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III-6〉 2010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현황(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 : 천)

| 구분 |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 | 자치구 |
|--------------|---------------|---------------|----------------|----------------|-----------------|---------------|
| 평균 | 1,511 | 1,491 | 1,415 | 1,672 | 4,583 | 709 |
| 최 고 (단체명) | 1,511 서울본청 | 1,553 부산본청 | 3,936 제주도본청 | 4,960 강원삼척시 | 14,010 충남홍성군 | 2,074 인천중구 |
| 최 저 (단체명) | - | 1,359 대전본청 | 887 경기도본청 | 648 충남계룡시 | 1,843 대구달성군 | 503 대전서구 |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 1인당세출예산액.

- 최근 5년간 충남 재정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연평균 11.2% 증가함
 - 충남 재정규모(당초예산 총계기준)의 연도별 변동은 2005년 2조 5,236억원에서 2009년에는 3조 8,641억원으로 연평균 11.2% 증가하였음

〈표 III-7〉 충남 재정규모의 연도별 추이(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 : 억원, %)

| 연도 | 금액 | 증감률 | 연평균증감률 |
|------|--------|------|--------|
| 2005 | 25,236 | - | 11.2 |
| 2006 | 27,614 | 9.4 | |
| 2007 | 31,799 | 15.2 | |
| 2008 | 35,499 | 11.6 | |
| 2009 | 38,641 | 8.9 | |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현황 지방예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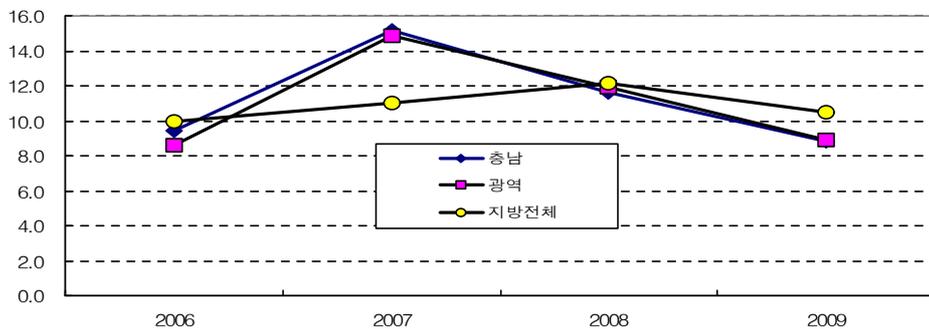
〈표 III-8〉 광역자치단체(시/도) 재정규모의 연도별 추이(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 : 억원, %)

| 연도 | 금액 | 증감률 | 연평균증감률 |
|------|---------|------|--------|
| 2005 | 560,977 | - | 11.0 |
| 2006 | 608,962 | 8.6 | |
| 2007 | 699,785 | 14.9 | |
| 2008 | 783,259 | 11.9 | |
| 2009 | 853,019 | 8.9 | |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현황 지방예산규모.

〈그림 III-1〉 충남 및 지자체 지방재정규모의 연도별 변동률(%)



■ 일반회계 세입의 자체재원 비중의 저하

- 2010년 충남 당초예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은 3조 3,427억원으로 이 중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0%,⁵⁾ 의존재원의 비중은 72.0%임
- 자체재원의 핵심이 되는 지방세의 비중은 23.5%에 그치는 반면, 국고 보조금은 55.1%에 달함

〈표 III-9〉 2010년 충남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조

(단위: 억원, %)

| | | 금액 | 비중 |
|------|-------|--------|-------|
| 자체재원 | 지방세 | 7,850 | 23.5 |
| | 세외수입 | 1,526 | 4.5 |
| | 소계 | 9,366 | 28.0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5,651 | 16.9 |
| | 국고보조금 | 18,410 | 55.1 |
| | 지방채* | 0 | 0.0 |
| | 소계 | 24,061 | 72.0 |
| 합계 | | 33,427 | 100.0 |

주: * 2010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일반회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음.
 자료: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도의 일반회계 예산.

- 2009년도 결산공시 기준 살림살이(일반회계+특별회계) 중 자체재원의 비중은 24.7%로 동종 지자체(도)의 자체재원 비중평균인 38.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충남의 전체 살림살이 대비 자체재원의 비중은 2008년 29.8% 이후 3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자체재원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표 III-10〉 충남과 동종 지자체(도 분청)의 살림규모 대비 자체재원 비중 비교

(단위: 억원, %)

| | 충남 | | | | 동종 지자체 평균(광역도 분청) | | | |
|------|-----------|----------|--------------|--------|-------------------|----------|--------------|--------|
| | 살림규모* (A) | 자체재원 (B) | 자체재원비중 (B/A) | 의존재원 | 살림규모* (A) | 자체재원 (B) | 자체재원비중 (B/A) | 의존재원 |
| 2007 | 35,825 | 11,579 | 32.3 | 17,022 | 48,966 | 19,997 | 40.8 | 19,771 |
| 2008 | 39,141 | 11,669 | 29.8 | 19,365 | 51,926 | 22,612 | 43.5 | 25,983 |
| 2009 | 44,124 | 10,904 | 24.7 | 24,173 | 57,947 | 22,074 | 38.1 | 31,174 |

* 살림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금액을 의미하며, 재정공시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자료: 충남 도청의 재정공시(2010.9) 자료를 기초로 제작성.

5) 뒤에서 언급되는 행정안전부의 시도 단위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자체재원의 비중과 재정자립도는 일치하지 않음

■ 주민의 지방세 부담액⁶⁾ 도 평균 이하

- 충남의 2010년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38만 5천원 수준으로 동 중 자치단체(도) 평균인 45만 2천원보다 6만 7천원이 낮음

〈표 III-11〉 자치단체 유형별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비교

(단위: 천원)

| 구분 |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 | 자치구 |
|--------------|---------------|-------------|--------------|--------------|----------------|-------------|
| 평균 | 1,136 | 761 | 452 | 442 | 391 | 126 |
| 최 고 (단체명) | 1,136 서울본청 | 927 인천본청 | 841 제주도본청 | 753 경기광주시 | 1,357 충북진천군 | 923 서울중구 |
| 최 저 (단체명) | - | 650 광주본청 | 275 전남본청 | 76 충남계룡시 | 134 충북단양군 | 33 부산북구 |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

- 충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세 수납비율은 최하 92.5%에서 최대 94.7%이며, 지방세 징수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표 III-12〉 충남의 지방세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A) | 실제 수납액 (B) | B/A | 미 수 납 액 | | |
|------|---------|------------------|------------------|-------|------------|------------|------------|
| | | | | | 계 (A-B) | 불 납 결손액 | 미수납 이월액 |
| 2009 | 750,385 | 874,747 | 809,513 | 92.5% | 65,234 | 10,346 | 54,888 |
| 2008 | 826,000 | 859,269 | 804,481 | 93.6% | 54,788 | 7,412 | 47,376 |
| 2007 | 780,000 | 834,926 | 781,174 | 93.6% | 53,752 | 9,200 | 44,552 |
| 2006 | 750,000 | 839,825 | 787,104 | 93.7% | 52,720 | 11,202 | 41,519 |
| 2005 | 696,000 | 785,544 | 744,118 | 94.7% | 41,426 | 3,847 | 37,579 |

자료: 각 년도 충청남도 재정공시(2005-2010).

■ 세외수입액의 감소

- 2010년 충남의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외수입액은 전년도에 비해 15.4% 감소한 1,516억원으로 편성됨
- 2010년 정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은 각각 21.9%, 78.1%로 임시적 세외수입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2010년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수입 및 잉여금 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31.7%, 31.3% 감소했기 때문임

〈표 III-13〉 충남 세외수입의 구성항목별 비중

6) 2010년 지방세액을 2009년 12월 31일 기준 인구로서 나누어 산출함.

(단위: 백만원, %)

| | | 2009 | | 2010 | | 전년대비 증감률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경상적 세외수입 | 소계 | 29,927 | 16.7 | 33,166 | 21.9 | 10.8 |
| | 재산임대수입 | 767 | 0.4 | 767 | 0.5 | 0.0 |
| | 사용료수입 | 4,051 | 2.3 | 5,188 | 3.4 | 28.1 |
| | 수수료수입 | 3,477 | 1.9 | 3,666 | 2.4 | 5.4 |
| | 사업수입 | 1,748 | 1.0 | 1,934 | 1.3 | 10.6 |
| | 징수교부금수입 | 4,705 | 2.6 | 6,376 | 4.2 | 35.5 |
| | 이자수입 | 15,176 | 8.5 | 15,232 | 10.0 | 0.4 |
| 임시적 세외수입 | 소계 | 149,252 | 83.3 | 118,441 | 78.1 | -20.6 |
| | 재산매각수입 | 45,200 | 25.2 | 30,873 | 20.4 | -31.7 |
| | 잉여금 | 80,000 | 44.6 | 55,000 | 36.3 | -31.3 |
| | 전입금 | 3,762 | 2.1 | 7,695 | 5.1 | 104.5 |
| | 융자금원금수입 | 5,000 | 2.8 | 5,000 | 3.3 | 0.0 |
| | 부담금 | 14,028 | 7.8 | 18,813 | 12.4 | 34.1 |
| | 잡수입 | 761 | 0.4 | 560 | 0.4 | -26.4 |
| 합계 | 500 | 0.3 | 500 | 0.3 | 0.0 | |
| 합계 | | 179,179 | 100.0 | 151,607 | 100.0 | -15.4 |

자료: 충남 2010년 당초예산 세입예산서를 기초로 작성.

■ 재정자립도7) 하락

-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 30.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24.0%까지 떨어졌으며, 전국 지자체 평균인 52.2%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2010년 동종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광역도 평균 재정자립도인 31.6%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임

〈표 III-14〉 지자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현황(2010년)

(단위: %)

| 구분 |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 | 자치구 |
|-------------|--------------|--------------|---------------|---------------|---------------|--------------|
| 평균 | 83.4 | 56.3 | 31.6 | 40.0 | 18.0 | 35.4 |
| 최고 (단체명) | 83.4 서울본청 | 70.0 인천본청 | 59.3 경기도본청 | 67.4 경기성남시 | 48.6 울산울주군 | 82.9 서울중구 |
| 최저 (단체명) | - | 43.2 광주본청 | 11.5 전남본청 | 9.3 전북남원시 | 8.6 전남고흥군 | 11.4 부산서구 |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 재정자립도.

- 충남의 재정자주도는 2006년 44.2%에서 2007년에 소폭 상승하였으나 2008년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10년에는 41.9%까지 하락하였으며 전체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75.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임
- 또한 2010년 동종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광역도 평균 재정자주도인

7) 자치단체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의미하며, 행정안전부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여 전국 평균 및 시도평균은 순계 기준으로, 자치단체평균은 총계기준으로 작성함.

46.0%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임

〈표 III-15〉 지자체 유형별 재정자주도 현황(2010년)

(단위: %)

| 구분 |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 | 자치구 |
|--------------|--------------|--------------|---------------|----------------|---------------|---------------|
| 평 균 | 84.2 | 70.0 | 46.0 | 69.1 | 62.2 | 57.9 |
| 최 고 (단체명) | 84.2 서울본청 | 76.7 인천본청 | 61.4 경기도본청 | 91.6 경기도과천시 | 72.9 강원홍천군 | 89.3 서울강남구 |
| 최 저 (단체명) | - | 65.2 광주본청 | 30.2 전남본청 | 52.2 전남목포시 | 48.0 전남신안군 | 30.8 부산북구 |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세출예산의 집중화

- 2010년 충남의 기능별 세출(일반회계)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은 22.7%이며, 금액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7,601억원임
- 농림해양수산 18.9%, 환경보호 9.8%, 일반공공행정 7.4%, 국토 및 지역개발 6.7%, 교육 6.2% 등으로 세출 비중이 높음
- 2010년에 크게 증가한 세출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41.3%(1,735억원) 증가했고, 보건 분야도 15.9%(641억원) 증가함
- 반면, 수송 및 교통(-9.7%), 일반공공행정(-10.3%), 국토 및 지역개발(-2.6%) 등의 분야는 전년대비 세출예산이 감소함

〈표 III-16〉 충남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일반회계 기준)

(단위: 억원, %)

| | 2009 | | 2010 | | 증감율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합 계 | 32,380 | 100.0 | 33,427 | 100.0 | 3.2 |
| 일반공공행정 | 2,740 | 8.5 | 2,459 | 7.4 | -10.3 |
| 공공질서 및 안전 | 1,228 | 3.8 | 1,735 | 5.2 | 41.3 |
| 교육 | 2,173 | 6.7 | 2,086 | 6.2 | -4.0 |
| 문화 및 관광 | 1,537 | 4.7 | 1,534 | 4.6 | -0.2 |
| 환경보호 | 3,086 | 9.5 | 3,284 | 9.8 | 6.4 |
| 사회복지 | 7,203 | 22.2 | 7,601 | 22.7 | 5.5 |
| 보건 | 553 | 1.7 | 641 | 1.9 | 15.9 |
| 농림해양수산 | 6,090 | 18.8 | 6,322 | 18.9 | 3.8 |
| 산업·중소기업 | 989 | 3.1 | 1,003 | 3.0 | 1.4 |
| 수송 및 교통 | 1,686 | 5.2 | 1,523 | 4.6 | -9.7 |
| 국토 및 지역개발 | 2,303 | 7.1 | 2,243 | 6.7 | -2.6 |
| 과학기술 | 267 | 0.8 | 259 | 0.8 | -3.0 |
| 예비비 | 336 | 1.0 | 331 | 1.0 | -1.5 |
| 기타 | 2,187 | 6.8 | 2,403 | 7.2 | 9.9 |

주: 당초예산 총계기준.

자료: 충남도청 홈페이지(2010.9).

- 2010년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으로8), 세출의

기능별 규모와 비중을 검토한 결과, 충남의 사회복지 비중은 25.5%로 도 전체⁹⁾ 평균 25.3%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

- 농림해양수산(16.1%), 국토 및 지역개발(8.8%) 분야의 비중은 도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으나, 일반공공행정(11.5%), 수송 및 교통(4.0%), 교육(5.4%) 분야의 지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농림해양수산 18.9%, 환경보호 9.8%, 일반공공행정 7.4%, 국토 및 지역개발 6.7%, 교육 6.2% 등으로 세출 비중이 높음

〈표 III-17〉 2010년 세출의 기능별 규모와 비중 비교(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단위: 억원, %)

| | 충남 | | 도 전체 | | 전국 지자체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일반공공행정 | 4,510 | 11.5 | 81,660 | 17.9 | 218,419 | 11.9 |
| 공공질서 및 안전 | 1,735 | 4.4 | 13,394 | 2.9 | 28,646 | 1.6 |
| 교육 | 2,115 | 5.4 | 28,748 | 6.3 | 84,238 | 4.6 |
| 문화및관광 | 1,552 | 4.0 | 22,682 | 5.0 | 91,543 | 5.0 |
| 환경보호 | 3,284 | 8.4 | 31,915 | 7.0 | 191,867 | 10.5 |
| 사회복지 | 9,990 | 25.5 | 115,693 | 25.3 | 420,533 | 23.0 |
| 보건 | 641 | 1.6 | 5,296 | 1.2 | 29,179 | 1.6 |
| 농림해양수산 | 6,321 | 16.1 | 53,919 | 11.8 | 140,809 | 7.7 |
| 산업/중소기업 | 1,003 | 2.6 | 10,556 | 2.3 | 37,509 | 2.0 |
| 수송 및 교통 | 1,565 | 4.0 | 33,017 | 7.2 | 201,953 | 11.0 |
| 국토 및 지역개발 | 3,448 | 8.8 | 25,848 | 5.7 | 168,335 | 9.2 |
| 과학기술 | 259 | 0.7 | 3,652 | 0.8 | 4,560 | 0.2 |
| 예비비 | 330 | 0.8 | 3,888 | 0.9 | 21,964 | 1.2 |
| 기타 | 2,474 | 6.3 | 27,108 | 5.9 | 192,700 | 10.5 |
| 합계 | 39,227 | 100.0 | 457,376 | 100.0 | 1,832,255 | 100.0 |

주: 당초예산 총계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임.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세출예산통계를 기초로 작성.

나. 계획의 기본방향

■ 재정건전성 확보와 신규전략사업을 위한 자원 확보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속적 증대를 위한 방안 강구
- 순세계 잉여금의 지방채무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8) 본 연구는 세출의 기능별 비중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나, 현재 재정고 지방예산 세출통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금액만 나와 부득이 이 통계를 활용하여 분야별 지출비중을 도출함.

9)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도를 의미함.

-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한 통합·정비를 지속 추진
- 기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통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민선5기 충남 도정의 신규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 부족한 재원 제약 하에서 예산운영 성과를 극대화하여 도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교육·문화 등 충남 도정의 역점과제 위주로 가용재원의 집중적인 배분이 요구됨
- 충남 도정의 역점과제를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한편 그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유도함

■ 성과예산제도 등 재정성과관리제도 활용을 통한 재정효율성 향상

-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하고 어떠한 성과를 성취하였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
- 성과 평가, 외부기관 지적 등 환류정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며, 성과평가결과, 우수 사업은 증액하고 미흡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조정
- 사업 및 예산 편성 이전에 투자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내외부의 심사를 강화하여 재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민간 협력적 재정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

- 도민이 지역의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의 실현과 동시에 그동안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도민참여형 재정모니터링시스템의 제도화와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재정운영과정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제를 유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함

■ 도의 기능 및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의 재조정

-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도의 행정기능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민간 이양 사업 및 민관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이들 사업을 시민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협력과 참여 속에서 공동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예산을 재편성함
- 또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군간의 기능분담 재조정과 함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도의 전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광역적 단위(도 혹은 몇 개 시군의 연합)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복 투자를 회피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다.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지방세 확충

- 지방세 체납은 제도적 측면에서 납세자의 윤리적 요인까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체납 요인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체납 개선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세 체납의 가장 큰 문제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금액 및 횟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해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는 강제징수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해가는 실효성 있는 지방세 체납개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예를 들면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관허사업의 인·허가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그리고 재산 압류·공매처분 등 지방세 체납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여 지방세 납부를 압박하는 강제징수 방법을 체계화하고 실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체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손처분¹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즉 결손처분 기준을 충족하는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이외의 징수 가능한 체납세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체납 업무를 전담하는 상시적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체납 지방세의 징수 실적에 따라 금전적 인센티브와 함께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와 업무에 대한 적극성을 진작시킬 필요가 있음

10)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행하는 행정처분.

- 체납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체납 부서 근무자는 장기 보직을 원칙으로 하여 체납 관련 법규 및 재산 압류·공매 처분 등에 정통하도록 하며 전담 부서 신설 초기에는 외부의 민간 전문 인력 채용을 고려할 수 있음
- 사전에 체납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의 납세의식 제고, 납부 고지서의 전자 송달 및 납부 방식의 전산화 등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세외수입 확충 및 민간자금의 활용

- 민원행정은 주로 시·군 사무인 관계로 도의 입장에서는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의 확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다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용료와 수수료 요금은 특정 편익과 비용의 연계 및 비용부담의 공평성의 관점에서 효율의 현실화를 포함한 요금 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경상세외수입의 경우 징수율이 동종 자치단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세외수입의 체납 관리 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충남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수익사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입장료 수입이나 사업 수입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임대 수입을 올리거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망됨
- 민간영역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영역의 활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점에서도 민간자금의 유치가 강조되고 있음
 - 주요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제도¹¹⁾, BTL방식¹²⁾, 지정관리자제도 등을 참고하여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까지는 주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나 공공시설 관련 토건사업에 민간자

11) PFI제도란 공공시설 등 사회자본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간주도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기법임.

12) 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민간은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Transfer), 대신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여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공공시설 건축방식임.

금을 유치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업 대상을 복지·교육·문화 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생산에 대한 민간 투자 및 참여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업 및 시민단체 등 민간 영역이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출구조조정

- 경상경비 절감방안
 - 인력운영비 : 조직 구조조정 및 신규증원 최소화, 정원대비 현원 결원을 일정비율 유지
 - 기본경비 :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 최소화를 통한 해외·국내여비 절감, 시정간행물·유사홍보물 통폐합, 홈페이지 활용 사이버 홍보 활성화, 에너지 절약 및 사무용품·우편요금 등 절약, 관용차량 운영 정밀진단을 통한 차량유지비 절감
- 사업비 절감방안
 - 예산편성 :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투자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의 체계적 심사, 계약심사 기법의 적용, 각종 사업추진에 실효성이 낮은 연구용역 최소화,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마을회관, 체육관·운동시설 등 공동활용), 공기단축을 위한 집중투자를 통해 실질 총사업비 절감, 재정사업 자율평가, 총사업비 관리제도 등을 통한 세출구조조정, 민간위탁사업 확대 및 민간참여 활성화 유도
 - 예산배정 : 사업진척도 및 사업물량 재조사 등을 통한 배정유보·감배정
 - 계약 : 계약심사 전담부서의 설치나 외부 전문 심사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한 원가심사 강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적용, 유사사업 통합 발주, 계속비 계약제도 등 적용
 - 사업집행 : 설계변경, 신기술·신공법 도입 등을 통한 절감,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로 목적외 사용금지, 옥외행사 최소화, 교육원 등 자체시설 활용을 통한 행사경비 절감, 각종 지역축제, 체육대회 등에 대한 민간보조금 절감, 조직내의 전문인력 활용으로 설계비·연구개발비 절감
 - 사후관리 : 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활용한 세출구조조정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집행잔액 등의 임의적 활용 제한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비
 - 재정사업의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고 예산누수를 예방
 - 복지부분의 통합관리망 확충, 부정 의료수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복지급여의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

- 농업부문에서 개별 농가단위 직접보조에서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접보조 방식으로 전환
- 성과정보의 활용
 - 성과평가, 외부기관 지적 등 환류정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
 - 예산낭비신고센터, 여론조사 및 자체 심의기구 등을 적극 활용
 - 국회·감사원·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지적된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예산낭비 사례로 판정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 연례반복적 집행부진 사업은 이월예상액을 포함하여 집행가능한 예산현액 수준으로 사업비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표 Ⅲ-18〉 세부추진시책

| 추진시책 | 사업유형 | 세부시책 |
|----------------------|-----------------------|--|
| 지방세 확충 | 지방세 체납 개선 및 신세원 발굴 | 강제징수 방법의 단계적 적용 결손처분의 적극적 활용 체납 전담부서 운영 및 인센티브 반영 주민의 인식전환 노력 지속적 부존자원을 대상으로 세원발굴 노력 |
| 세외수입 확충 및 민간자금 활용 | 관리체계 개선 | 요율의 현실화 및 요금체계의 개선 세외수입의 체납관리체계 개선 |
| | 수익사업 창출 | 충남의 문화관광사업과 수익사업을 연계 공유재산 활용 임대수입 확충 |
| | 민간자금 사업대상확대 | 민간자금 유치영역 확대 민관협력체제 구축 |
| 세출구조조정 | 경상경비 절감 | 인력운영비 일정비율 유지 기본경비의 절약 |
| | 사업비 절감 | 예산편성 및 전과정의 체계적 관리 |
| | 전달체계 정비 | 재정사업 전달체계 정비 복지급여체계 개선 농업부문의 간접보조 방식 전환 |
| | 성과정보 활용 | 환류정보 활용 자체심의기구 활성화 |

제 3 장

투자계획 및 집행방안

제3장 투자계획 및 집행방안

가. 투자사업계획

■ 투자 대상사업의 선정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등 중앙정부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
- 도 전체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군 경계를 넘어서 개발과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선정
- 시·군이 요청한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도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 선정
- 낙후 시·군의 사업추진을 지원하여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 단계별 사업추진 원칙

- 각 단계별 사업추진 원칙은 상위계획·관련계획의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계획목표 달성도, 지역개발 파급효과 등이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표 III-19〉 단계별 사업추진 원칙

| 단계 | 사업기간 | 대상사업 선정기준 |
|-----|------------|--|
| 1단계 | 2011~201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조기 완공되어야 할 기반사업 · 기반사업으로 자원확보가 가능한 사업 ·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국가사업 등 단계별 개발계획이 제시된 사업 · 투자자본의 규모가 작고, 회수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사업 · 민간자본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활용이 가능한 사업 |
| 2단계 | 2016~202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본의 규모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대규모 사업으로 기초조사, 기본투자가 필요한 사업 · 장기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 · 차후 지속적인 개발 및 선행사업 등에 의해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 |

■ 총투자규모 및 투자비 분담

- 계획기간(2011~2020년) 동안 사업추진에 필요한 총 투자소요액은 약 76조 222억원으로 산정
- 부문별 투자분담내역에서는 산업부문 27.3%로 가장 높고, 도시 및 지역개발부문 22.8%, 교통·정보인프라부문 20.3%, 환경부문 12.9%, 문화관광부문 10.8%, 지역자원개발부문 4.6%, 생활복지부문 1.2%임
- 재원별 투자내역은 국비가 29조 8,707억원으로 35.1%를 차지하며, 지방비는 13조 7,446억원으로 16.2%, 민자 등 기타가 41조 4,820억원으로 48.7%임
- 계획단계별 투자내역은 2011~2015년 47.5%, 2016~2020년 41.8%임

〈표 III-20〉 총투자사업내역

(단위: 억원)

| 구분 | 총투자금액 | 단계별 투자계획 | | | | | | 재원별 투자내역 | | |
|--------------|---------|----------|--------|--------|--------|--------|-----------|----------|---------|---------|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2020 | 국비 | 지방비 | 기타 |
| 계 | 760,222 | 64,702 | 93,654 | 85,060 | 86,403 | 74,657 | 355,746 | 298,707 | 137,446 | 414,820 |
| 도시 및 지역개발 부문 | 168,627 | 12,110 | 14,343 | 11,692 | 10,977 | 9,526 | 109,979 | 6,250 | 9,734 | 178,222 |
| 산업부문 | 218,004 | 30,037 | 39,734 | 34,442 | 33,260 | 23,333 | 57,198 | 43,466 | 48,747 | 140,340 |
| 문화관광 부문 | 80,286 | 5,941 | 6,409 | 8,181 | 8,361 | 8,534 | 42,860 | 16,584 | 22,266 | 53,083 |
| 사회인프라 부문 | 164,667 | 3,439 | 12,630 | 14,111 | 17,441 | 20,772 | 96,275 | 153,650 | 8,607 | 10,151 |
| 생활복지 부문 | 10,168 | 1,401 | 1,917 | 2,087 | 2,382 | 334 | 2,047 | 2,528 | 5,619 | 2,444 |
| 자원개발 부문 | 31,747 | 5,067 | 8,760 | 5,486 | 4,796 | 2,280 | 5,358 | 12,487 | 6,480 | 20,149 |
| 환경부문 | 86,724 | 6,708 | 9,861 | 9,062 | 9,187 | 9,878 | 42,029 | 63,743 | 35,994 | 10,431 |

■ 재원조달 기본방향

-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재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과 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 의해 추진
 - 개발계획이 수립된 대규모 개발사업(세종시, 내포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연계된 사회간접시설의 재원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국가계획 수정계획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협력)
- 민자 선호사업인 관광사업, 지역개발사업 중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자·외자 등을 유치하여 재원조달
- 낙후 농어촌지역 정비사업,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축·수산업 및 제조업 육성사업,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은 관계 부처별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원 확보
- 주민의 욕구가 큰 문화·체육 기반시설은 BTL(Build Transfer Lease)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44개 공공시설에 대하여 확대·추진
 - 기초 서비스제공을 위해 건설·운영해야 하는 국·공립시설
 - 시설이용료 수입으로는 민간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 민간의 창의성 활용으로 사업편익 증진과 비용이 절감되는 시설 등

■ 재원조달 방안

- 중앙정부 의존재원 확보
 -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 재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
 -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와 연동하는 지방재정운용
 - Matching Fun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운용 시행
 - 대규모 사회간접시설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연계사업과 개발비용의 분담 등을 통해 적시에 재원확보 유도
-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투자재원 조달
 -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신세원의 적극적 발굴 및 체납 지방세의 적극적인 징수를 통한 재원조달
 - 사용료,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추진
 -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방채를 활성화하여 투자사업의 현재 비용 부담자와 미래 수혜자의 비용 편익의 분담

- 내포신도시 건설 및 세종시 건설에 의한 인구 유입 및 부동산 확대에 지방세수 확충이 예상
- 이러한 조세채권을 기반으로 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민자유치
 - 민자 투자수요가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한 유인책 제공
 - 민자수요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기업도시 등 민간에게 유리한 투자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투자유치
- 기타 재원조달 방안
 - 충남개발공사를 활용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의한 재원 조달

나. 투자사업 재원조달 및 추진체계 구축

■ 재원조달 방안

- 효율적인 도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재정 및 예산과 연계하여 세부 부문별 실천계획 수립
- 재원투자계획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투자사업 시행
- 재원운용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 일부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추구로 인한 소외가 발생하여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려
- 중앙정부 재정 지원사업, 도 자체 사업, 도와 시·군 합작사업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투자사업 추진
- 부문별 계획 중 도 발전을 전략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선정,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집중 투자

■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화

- 국내외 민자, 외자유치,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도 종합계획의 지속적·실천적 추진, 여건변화에 따른 도 종합계획의 재정비 등을 전담할 기획조정 기능을 포함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
- 투자사업에서 민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인 충남개발공사를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행자로 활용

